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개정 추진관련 협회대응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설비 외에 전기설비 및 가스설비에 대하여도 관련기관으로부터 1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의 추진현황 및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전규정〉

- 제25조(자체소방점검) 각 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함

### 〈개정규정〉

- 제15조(소방점검)제3항
  -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1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개정)
  - 가스설비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1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신설)

### ※ 관련 규정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제15조제3항
- 적용대상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
- 시행일 : 2004. 5. 30(공포일 2003. 11. 27)
- 모법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 ■ 협회가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요약

- 제1안 : 공공기관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의무제도 폐지
  - 전기사업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일정주기(2년 내지 3년)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반복해서 동일 검사기관으로부터 동일 검사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게 할 이유가 없음
- 제2안 : 안전점검제도 폐지 불가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복수화
  - 방화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제도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현행 한국전기안전공사 외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자 추가

### ■ 그간의 협회활동 내용

- 소방방재청(구 행자부) 방문회의 : 15회
- 안전공사 방문회의 : 2회
- 산자부(에너지안전과) 방문회의 : 4회
- 소방방재청 건의 공문발송 : 4회

### ■ 대응 결과

- 점검기관 복수화 건
  - 2005년도 상반기중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관을 복수화 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문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공문접수(문서번호 : 소방정책과-1630, '04.9.25)
- 점검주기 면제의 건 (예정)
  -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연도에는 동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같음으로 소방방재청의 업무지침 시행협의 중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4호

##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안내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6,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08호, 2002. 5. 29, 2002. 9. 26 고시전환, 2003.10.9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0. 19.  
산업자원부장관

###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6,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에너지발전"이라 함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대

체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가용설비"라 함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설비중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설비"라 함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설비중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5.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및 기금을 말하며, "지원비율"이라 함은 총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대체에너지발전 전원 및 적용기준)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 대체에너지발전 전원 및 적용기준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중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RDF발전 포함), 조력으로서 하며 별표 1의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별로 설비용량기준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지역 또는 장소에 적용대상 시설을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설비용량기준을 적용한다.

③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대체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발전량)으로 한다.

제5조(적용대상 전원별 기준가격) 적용대상 전원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대체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공급하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적용하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양광, 풍력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한다.
2.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조력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최초사업자의 적용기간만료일 30일 전에 새로운 적용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 이후(고시일포함)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③대체에너지발전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의 증설 또는 개·보수 등으로 동일사업장(생산된 전기가 동일 접속점에 연결되어 공급되는 지역)에서 발전설비 용량이 2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발전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20%미만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전의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제8조(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장별, 대체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총발전량중 자가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동일사업장별로 대체에너지발전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의 증설 또는 개·보수 등으로 발전설비용량이 2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이를 기존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매립지가스 및 폐기물소각발전사업자의 의무조항)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매립지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소각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체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 제3조 제2호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체에너지발전지원금 지원실적 및 계획
2. 월별 차액지원금, 대체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3.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 자료 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한 사항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 위탁한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의하여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한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자가용전기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자가 생산한 전력 중 전력거래가 가능한 전력의 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조(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별표 1의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중 태양광, 풍력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2006. 10. 10일까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20MW, 250MW까지로 한다. 다만,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사업자별로 최대 3MW로 한다.